연구자료 D99/1994. 12
번역 자료

국제교역되고 있는 채소종자 통제를 위한 OECD제도

윤 호 섭 (연 구 위 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빈 면

머 리 말

국민경제의 국제화와 함께 우리 경제의 선진화, 고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대한 가입론이 대두되고 있으며, 정부도 1996년 가입을 목표로 각종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OECD 가입에 따른 의무사항에 대한 검토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시점에 와 있다.

OECD 가입시 의무사항중의 하나인 일반적 의무는 OECD의 규범을 원칙적으로 준수할 것을 포함하고 있다. OECD 규범중 농업관련 규범은 14개로 알려져 있으며, 농업부문에서도 이에 대한 검토가 빠른 시일내에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 자료는 "국제교역되고 있는 채소종자의 통제를 위한 OECD제도를 제정한 이사회 결정"을 번역한 것으로서, 관련 문서는 C(71)31 (Final), C(74)197, C(76)133, C(77)121 및 C(91)19(Final)이다. 즉, 국제교역되고 있는 채소종자의 통제를 위한 OECD 제도는 1971년 제정된 이후, 1974년, 1976년, 1977년 및 1991년등 4차에 걸쳐 수정되었다. 따라서 본 자료는 각 항목 또는 부분별로 최신 수정된 항목 또는 부분을 번역한 것이다.

이 자료에 포함된 내용은 "국제교역되고 있는 채소종자의 통제를 위한 OECD제도"를 제정한 이사회의 결정내용과 함께, 그 결정에 따른 부속 내용 등이다. 여기에는 기본 및 보증종자의 생산, 표준 종자로의 지정,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내용등이 포함되어 있다. 기본 및 보증종자의 생산과 관련하여서는 재배종의 승인, 재배종의 목록, 종자범위의 지정, 기본종자의 생산, 보증종자의 생산, 시료채취 및 봉인, 종자용

기 내용물의 확인과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표준종자로의 지정과 관련해서는 표시 및 확인번호의 지정, 시료 채취, 대조구 및 실험실 시험과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부록의 내용으로는 OECD 채소 종자 제도하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간략한 설명, 기본 및 보증종자 생산을 위한 최소 조건, Seed lot의 참조 번호, OECD Label의 설명과 종자 용기의 표시, 보증서의 견본, 보증종자의 "소포장"의 최소무게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함께 OECD의 채소 종자제도를 OECD 비회원국에 확대하기 위한 절차도 첨부 2에 나타나 있다.

따라서 이 자료가 정책당국의 OECD 가입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1994.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정 영 일**

목 차

국제교역되고 있는 채소종자 통제를 위한 OECD제도를
제정한 이사회 결정 ····· 1

첨부 1 국제교역되고 있는 채소종자의 통제을
위한 OECD제도 ····· 3
부록 1 OECD 채소종자 제도용 용어 정의 ····· 19
부록 2 OECD 채소종자 제도하에서 기본 및 보증종자
생산을 위한 최소 조건 ····· 23
부록 3 Seed Lots의 참조번호 ····· 29
부록 4 OECD Label의 설명/종자용기의 표시 ····· 33
부록 5.1 Specimen Certificate ····· 39
부록 5.2 분석결과 ····· 43
부록 6 보증종자의 "소포장"의 최소무게 ····· 47

첨부 2 국제교역되고 있는 채소종자의 통제에 관한 OECD제도를
OECD 비회원국에 확대하기 위한 절차 ····· 51

이 제도의 참가국 ····· 57

빈 면

국제교역되고 있는 채소종자의 통제를 위한 OECD제도를 제정한 이사회 결정

이사회는,

○ 1960.12.14의 OECD 협정문 제5조 (a) 및 (c)와 관련하여, 농업위원회의 제안에 의거하여

Ⅰ. 다음을 결정한다.

1. 국제교역되고 있는 채소종자의 통제를 위한 OECD제도(이하 OECD 채소종자제도)는 본 결정의 규정 및 본 결정의 첨부 1에 나타난 규칙과 지시사항에 의거하여 운영될 것이며,
2. OECD 채소종자제도는
   (a) OECD의 회원국 및 기타 UN 회원국, 또는 본 결정의 첨부 2에 나타난 참가절차에 따라 참여를 희망하는 전문기관에 개방될 것이며
   (b) 본 제도에 참가하는 국가의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 의해 수행될 것이며,
3. 본 제도에 참여를 희망하는 국가는 사무총장에게 통보하고, 사무총장은 이를 다른 참여 국가에 통보해야 하며,
4. 참가국은 첨부 1에 나타난 규칙과 지시사항을 적용하기 위한 필요조치를 취해야 하며, 상기 2.(b)항에서 언급된 기관이 채택할 것을 보증하면서
5. 상기 의무사항의 불이행에 관한 이의서를 제출 하기를 희망하

는 국가는 OECD에 그 사항을 제출할 것이며, 이 경우 농업위원회는 그 이의서를 검토한 후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며,

6. 이사회가 농업위원회의 제안을 다른 방법으로 결정하지 않는 한, 본 제도는 매년 경신될 것이다.

Ⅱ. 이사회가 본 제도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농업위원회가 이사회에 보고할 것과 본 제도를 수정하는 제안을 필요시 이사회에 제출할 것을 지시한다.

첨 부 1

국제교역되고 있는 채소종자의 통제를 위한 OECD제도

빈 면

첨 부 1

국제교역되고 있는 채소종자의 통제를 위한 OECD제도

서 론

1. 본 제도의 목적은 참가국의 채소 생산 향상을 위하여 일관된 고품질 종자의 사용을 도모함과 동시에, 이러한 종자의 국제교역을 용이하게 하는데 있다. 본 제도는 합의된 원칙에 따라 국제교역용으로 생산·가공된 종자의 범위에 대하여 상표(labels) 및 증명서의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2. 본 제도는 OECD의 회원국 및 첨부 2에 나타난 참가절차에 따라 본 제도에 참가하기를 희망하는 UN기구의 회원국 또는 전문기관에 개방되어 있다. 본 제도에 참가하고 있는 국가는 본 제도의 규칙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보증해야 한다.
3. 본 제도는 모든 종(種)의 채소 종자에 적용 가능하며, 다음의 원칙에 의거한다.

3.1. 본 제도는 각 참가국의 지정기관이 보존하고 있는 발표 목록에 포함된 재배종만을 포함함.

3.2. 본 제도는 재배종의 확실한 기본 종자로 부터 1세대를 통하여 직접 생산된 보증종자의 생산에 대비한다. 보증종자의 품질을 결정하는 주 요소는 기본 종자의 품질이며, 이러한 이유로 기본 종자의 검사 및 시험을 규정한다. 보증종자는 사후규제 검사(post-control tests)를 필요로 한다.

3.3. 본 제도는 표본추출과 일정 수의 시료를 사후규제 검사를 받게 함으로써 종자를 표준종자로 지정할 것을 준비한다.

3.4. 본 제도가 재배종의 진위성(trueness) 및 개별 종자 lot의 품종적 순수성을 입증함으로써 만족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규제 검사가 실시된다.

4. 본 제도는 상업용 종자(즉, 본 제도의 용어로서 "보증"도 아니며 "표준종자"로 거래되는 것도 아니고, 공식 목록의 포함 여부에 관계없는 재배종이며, 국가의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판매자의 책임아래 생산 및 거래되는 종자)의 거래에 간섭할 의도가 없다.

5. 본 제도의 성공 여부는 참가국의 지정기관간 긴밀한 협조의 유지와 종자의 생산, 가공 및 분배의 각 단계에서 종자의 신뢰성에 좌우될 것이다.

규칙과 지시사항

1. 일반사항

OECD 채소종자제도는 하기사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최소요구사항으로 간주되고 있는 규칙과 지시사항에 따라 생산되고, 표본 추출되어 상표가 붙은 채소의 재배종 종자를 포함한다. 본 제도는 참가국 정부

의 책임아래 시행되며, 각국 정부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기관을 지정한다.

가. 기본 및 보증종자의 생산

2. 재배종의 승인

재배종이 명확하고, 채소생산에 사용되는 세대가 충분히 균일하며 안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정기관이 점검한 경우에 한해서, 재배종은 기본 또는 보증종자의 생산용으로 승인된다. 필수적인 형태학적 또는 생리학적 특성을 포함하여 적절한 기술사항이 입수 가능해야 한다.

3. 적격 재배종의 목록

3.1. 각국은 규칙 2에 따라 승인된 공식 국가목록을 발간하며 매년 개정해야 한다.
이 목록상에서는 동의어와 동음이의어가 명확하게 나타나야 한다.

3.2. 목록화된 재배종의 종자만이 본 제도하에서 인증에 적격하다.

3.3. 각 재배종의 육종자의 성명과 주소가 알려져야 한다.

3.4. 승인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그 재배종은 목록에서 삭제된다.

4. 종자범위의 지정

부록 1에 정의된 바와 같이 다음 범위의 종자가 본 제도에서 인정된다.

- 기본종(Pre-basic Seed)
- 기본종자(Basic Seed)
- 보증종자(Certified Seed)

5. 기본종자의 생산

5.1. 각 재배종의 기본종자는 양친물질(parental material)을 계속 공급할 수 있으며, 재배종의 특성 유지를 보증할 육종자의 책임아래 생산된다. 육종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자가 책임을 진다.

5.2. 각 참가국은 OECD 채소종자 제도하에서 재배종의 진위(trueness)와 품종적 순도(varietal purity)가 만족할 만한 것으로 승인된 기본종자의 생산에 관한 요구사항을 공식적으로 발간한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국가제도에 상응하는 범주 이상이어야 한며, 또한 부록 2에 나타난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생산기의 적절한 단계에서 지정기관이 수행하는 성장 식물의 검사시 적어도 1번은 만족스러운 수준이 되어야 한다. 기본종자가 재배종의 원산지 이외의 국가에서 생산되는 경우 관련 당사국의 지정기관간에 사전에 기술적 조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5.3. 지정기관은 수확과 봉인 및 상표부착 사이에 종자의 동일성(identity) 및 품종적 순도가 유지되어 왔음을 보증하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5.4. 공식시료(Official sample)는 기본종자의 보증용으로 제출된 기본종자의 청결한 lot와 규칙 9 및 10에 따라 봉인되어 증명할 수 있는 또는 상표가 부착된 종자 용기(seed container)에서 추출된다. 이러한 시료는 규칙 6에 나타난 요구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차기년도에 사용될 기본종자는 재차 표본추출할 필요가 없으나, 용도를 충분히 감안하기 위하여 기록은 지정기관에게 입수 가능해야 한다.

5.5. 요청이 있는 경우, 기본종은 공식적으로 규제될 수 있으며,

특별 상표가 공급될 수 있다(참조 : 부록 4.3.1). 증식 주기에서 기본종이 도달하는 단계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이여, 기본종이 보증종자를 앞선 세대수에 대한 진술이 있어야 한다.

종자를 생산하는 작물은 공식적으로 검사되고, 기본종자를 생산하는 작물에 요구되고 있는 표준 이상이어야 한다. 기본종자의 규제용 요구사항이 모두 적용되고 있다.

6. 보증종자의 생산전 사전규제

6.1. 기본종자의 시료중 일부는 시료 수령이후 첫 계절에 사전 대조구에 식부되어야 한다. 이 때 식물의 갯수(number of plants)는 재배종의 진위 및 품종적 순도를 추정하기에 충분해야 한다.

사전 대조구에서의 시험결과 재배종의 진위 또는 품종적 순도가 유지되지 않았다면, 지정기관은 관련 lot의 종자를 보증하지 아니한다.

6.2. 지정기관의 재량으로 기본종자의 각 시료의 다른 부분은 분석적인 순도(analytical purity) 및 발아 그리고 특정 종자전염병(seed-borne diseases)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험실 시험용으로 제출될 수 있다. 이러한 시험은 지정기관이 인정하는 과학적인 방법[1]에 따라 실시된다.

6.3. 기본종자의 각 시료의 다른 일부는 기본종자의 향후의 시료(future sample) 및 보증종자의 시료와 대조구에서 비교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기간동안 보관된다.

6.4. 지정기관은 부록 5.1에 나타난 견본에 따라 기본종자의 품

---

1) 국제종자시험협회(ISTA: International Seed Testing Association)의 "종자시험을 위한 국제적인 원칙"은 이러한 시험을 위해서 적절한 방법으로 지적되고 있다.

종적 순도용 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시료가 분석적인 순도 및 발아, 그리고 특정 종자전염병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험실 시험용으로 제출되었다면, 부록 5.2에 나타난 절차에 따라 분석결과 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다. 이 두가지의 증명서는 동일한 OECD 참조번호를 가지고 있다.

7. 보증종자의 생산

7.1. 각 참가국은 OECD 채소종자 제도하에서 재배종의 진위와 품종적 순도가 만족할 만한 것으로 승인된 보증종자의 생산에 관한 요구조건을 공식적으로 발간한다.이러한 요구사항은 관련국의 국가제도에 상응하는 범주이상이어야 하며, 또한 부록 2에 나타난 수준이상이어야 한다.

7.2. 보증종자는 재배종의 원산지 국가 또는 그 이외의 국가에서 생산될 수 있다.

보증종자의 생산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생산국의 지정기관에 증식이 수행되었으며, 각 작물(each crop)의 포장검사(field inspection)가 적어도 한번 수행되었음을 통보해야 한다.

각 종(種) 채소(each species of vegetable)의 증명에 소요되는 종자작물(seed crop)의 최소 20%는 공식적으로 포장에서 검사되어야 한다.

7.3. 지정기관은 각 포장 검사보고서가 규칙 7.1의 요구사항이 충족되었는가를 나타내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7.4. 규칙 7.2에도 불구하고, 재배종의 원산지 국가의 지정기관이 포장검사를 요구하는 경우, 증명에 소요되는 종자작물은 공식적으로 포장에서 검사되어야 한다.

7.5. 지정기관은 수확과 봉인 및 상표 부착사이에 종자의 동일성 및 품종적 순도가 유지되어 왔음을 보증하기 위하여 모든 필

요 조치를 취해야 한다.

7.6. 종자가 최종 인증전에 수출되는 경우, 수출입국의 지정기관 간에 적절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 때 부록 4에 기술된 특별 label이 붙여진다. 이 label은 종자가 규칙 7.1~7.4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마는 규칙 7.7하에서 최종적으로 승인되지 않았음을 나타내고 있다. 시료는 최소 2년간 보관된다.

7.7. 공식시료는 보증용으로 제출된 청결한 lot와 규칙 9 및 10에 따라 봉인되어 증명할 수 있는 또는 상표가 부착된 종자용기(seed container)에서 추출된다. 이러한 시료는 규칙 7.8 및 8에서 나타난 요구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7.8. 시료중 일부는 분석적인 순도 및 발아용 실험실 시험으로 제출되며, 지정기관의 재량에 따라 특정 종자전염병의 존재 유무를 시험한다. 이러한 시험은 지정기관이 인정하는 과학적인 방법에 따라 실시된다(ISTA의 "종자시험을 위한 국제원칙"이 적절한 방법으로 지적되고 있음).

7.9. 지정기관은 부록 5.1에 나타난 견본에 따라 보증종자의 품종적 순도 증명서 및 부록 5.2에 나타난 절차에 따라 분석결과 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다. 이 두가지 증명서는 동일한 OECD 참조번호를 가지고 있다(부록 3 참조).

8. 보증종자의 사후관리

8.1. 지정기관은 시료중 일부를 시료 수령이후 첫 계절에 사후관리 대조구에서 성장시켜 봄으로써 재배종의 진위 및 품종적 순도를 점검한다. 시료의 선택은 지정기관의 재량에 달려 있다.

8.2. 규칙 7.7에 따라 추출된 각 시료의 일부는 최소 2년간 보관된다.

8.3. 보증종자가 재배종의 원잔시 국가 이외에서 생산되고 보증될 때, 관련국의 지정기관간에 사후 관리 시험을 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8.4. 정해진 요금의 지불을 포함하여 규정된 조건 모두를 따른다는 전제하에, 본 제도하에서 인증된 종자의 소유자는 인증일로부터 2년이내에 지정기관에 신청을 하면, 재배종의 진위 및 품종적 순도의 시험결과에 관한 진술서(Statement)를 받을 수 있다.

9. 공식시료채취 및 봉인(Fastening)

9.1. 모든 시료는 지정기관이 인정한 과학적인 방법에 따라 지정기관의 공인된 사람에 의해 seed lots에서 추출된다(이 경우 ISTA의 "종자 시험을 위한 국제원칙"을 적절한 방법으로 간주).

9.2. 본 규칙하에 표본추출용으로 제시된 seed lots은 동질적(homogeneous)이어야 한다. 만약 seed lot이 충분히 동질적이지 못한 경우, 지정기관은 lot의 보증을 거절할 수 있다.

9.2.1. 밀 종자의 크기 또는 그보다 큰 종자의 경우 1개의 seed lot은 20,000kg을 초과할 수 없으며, 밀보다 작은 종자의 경우는 10,000kg을 초과할 수 없다.

9.2.2. 위에서 언급한 20,000kg 또는 10,000kg을 초과하는 종자는 20,000kg 또는 10,000kg 이내의 별개 seed lot으로 세분되며, 이때 각 seed lot은 규칙 10.1에 따라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

9.2.3. 최대허용오차는 5%이다.

9.3. 종자 용기는 봉인되어야 하고, 그 내용물은 표본추출시 규칙 9.4 및 10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는 사람 또는 그의 감독하에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

9.4. 종자 용기는 봉인을 파괴하거나 또는 용기의 내용물이 바뀌었을 가능성을 나타내는 흔적을 남기지 않고는 개봉될 수 없는 방법으로 봉인되어야 한다. 봉인기구(fastening device)의 효력은 9.3항에 나타난 label을 결합시키거나 또는 봉인(seal)의 사용 등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한다. 봉인이 재사용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요구조건은 면제된다.

10. 종자 용기 내용물의 확인

10.1. 각 용기의 내용물은 다음에 의해 표시되어야 한다.

10.1.1. 지정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사전에 사용된 흔적이 없으며 부록 4에 있는 명세와 일치하는 새로운 label. Tie-on labels은 봉인과 관련하여서만 허용되며, 접착성 label(adhesive labels)의 재사용은 금지되어 있다. 또는

10.1.2. 용기의 모든 외부에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
모든 정보는 지정기관이 승인한 방법대로(label의 색깔 표시를 포함하여) 부록 4에 따라 label에 인쇄되어야 함.

10.2. label 또는 인쇄된 정보의 유형(Model)은 승인전에 OECD에 제출되어야 한다.

10.3. 본 규칙하에서 요구되는 정보의 사본(Copy)은 각 용기에 포함될 수 있으나, 용기 외부의 OECD label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10.4 기본종자가 생산국에서 사용되고 모든 정보를 포함한 국가 label이 붙여진 경우, 기본종자에 흰색 label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

11. Bulk의 부쉼, 재가공, 재표시 및 재봉인

11.1. 보증종자는 어떠한 크기의 용기(containers)에도 재포장될 수 있으나 보증종자로서의 명칭은 유지되어야 하며, 다음의 요구사항이 충족되어야 한다.

11.1.1. 본래의 label과 봉인은 제거되고, (추가적인 가공 또는 종자의 처리 등을 포함한) 모든 작업은 지정기관의 감독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재표시 및 재봉인시 규칙 9와 10에 따른다.

11.1.2. 지정기관의 재량에 따라, 새로운 참조번호 또는 원래의 참조번호가 새로운 label에 사용될 수 있다. 새로운 참조번호가 사용될 경우 원래 참조번호의 기록이 지정기관에 의해 유지되어야 한다. 지정기관의 이름과 종(species), 재배종 이름 및 범위 등 원래 label에 있던 정보는 새로운 label에 포함되어야 한다.

11.1.3. 한가지 재배종의 2개 이상의 보증종자 lots는 지정기관의 규정에 따라 혼합될 수 있다.

11.1.4. 지정기관의 재량에 따라 각 seed lot은 봉인시 표본 추출될 수 있다.

11.2. 지정기관의 감독하에 보증종자는 부록 4에 나타난 것과 동일하게 또는 적은 무게로 재포장될 수 있으며, 요청하는대로 공식적으로 봉인될 수 있다. 공식적으로 봉인되지 않은 경우, "OECD 보증종자에서 포장됨(Packaged from OECD Certified Seed)"이란 말 이외에 OECD제도의 참조번호를 가질 수 없으나, 내용물의 원산지 추적을 위해 Code number를 가질 수 있다. 이 서류의 글자는 동일한 크기이어야 한다. 원래의 증명 label(certification label)에 제시되었던 사실과 모순되는 포장(package)에 대해서는 claim을 할 수 없다. 인증된 lot가 파손되는 경우 소포장으로 되어 있는 종자의 증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정기관은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1.3. 포장작업에 책임있는 사람은 모든 작업과 본 제도하에서 생산된 종자의 채집과 처분에 관한 모든 기록을 보존해야 하며, 이러한 기록은 지정기관에게 입수가능해야 한다.

나. 표준종자로의 지정

12. 개요

12.1. 표준종자는 명확하고, 충분히 균일하며 안정적인 재배종으로서 부록 1의 재배종의 정의와 일치하는 재배종의 종자의 종류(category of seed)이다.

12.2. 본 제도의 "가"부분에 적격한 재배종은 표준종자의 생산에 자동적으로 적격하다.

12.3. 위(12.2)에서 언급된 것과 다른 재배종의 경우, 지정기관이 적절한 사후관리시험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하는 경우 표준종자의 생산에 적격하다. 지정기관은 이러한 재배종의 목록을 유지한다. 그러나 승인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목록에서 제외한다.

12.4. 공급자는 지정기관에 자신의 의도를 통보하는 조건하에서 종자를 표준종자로 지정할 수 있으나, 단 지정기관의 감독하에 있어야 한다. 공급자의 이름은 seed lots의 label에 기재되어야 한다.

12.5. 공급자는 표준종자의 재배품종에 대한 진위성 및 품종적 순도에 관하여 지정기관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또한 지정 효과에 관한 그의 진술의 수정 책임도 진다.

12.6. 종자는 분석적 순도 및 발아, 그리고 적절한 경우 특정 종자 전염병의 존재확인을 위하여 실험실 시험을 거치게 되며, 시험결과는 지정기관에 입수가능해야 한다.

13. 표시 및 확인번호 지정(Labelling and Identification Numbering)

13.1. 표준종자의 각 용기(container) 또는 포장의 내용물은 다음에 의하여 표시되어야 한다.

13.1.1. 부록 4에 나타난 명세와 일치하고 종자 공급자가 부착했으며 그의 이름이 나타난 label.

또는

13.1.2. 용기 또는 포장 외부에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

모든 정보는 부록 4에 따라 label에 인쇄되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지정기관이 승인한 방법대로 공급자가 하게 되며, 공급자의 이름이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된다.

13.2. lot의 확인번호는 종자의 공급자가 매기고 기록해야 하며, 공급자의 이름은 label에 나타나야 한다. 공급자는 지정기관이 입수 가능하도록 이러한 정보를 보존해야 한다.

14. 시료 채취(또는 표본 추출)

모든 Seed lot는 지정기관의 감독하에 표본 추출된다. Label에 이름이 나타난 공급자는 이 시료를 최소 2년간 보관해야 하며, 지정기관의 요청시 제출해야 한다. 지정기관은 공식적으로 시료를 임의 추출한다.

14.1. 밀 종자의 크기 또는 그 보다 큰 종자의 경우, 1개의 seed lot는 20,000㎏을 초과할 수 없으며, 밀보다 작은 종자의 경우 10,000㎏을 초과할 수 없다.

14.2. 위에서 언급한 20,000㎏ 또는 10,000㎏을 초과하는 종자는 20,000㎏ 또는 10,000㎏이하의 lots로 세분되며, 이때 각 lot는 규칙 13.1에 따라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

14.3. 최대허용치는 5%이다.

15. 기 록

표준종자 lots에 표준오차 label을 부착한 공급자는 이 lots의 기록을 보존해야 하며, 지정기관의 요청시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16. 대조구 및 실험실 시험

지정기관은 재배종의 진위 및 품종적 순도를 위하여 대조구나 실험실 또는 양쪽 모두에서 시료의 일부를 점검하며, 점검된 것에 대해서는 OECD에 통보한다.

다. 운용방법

17.

17.1. 본 제도에 참가하는 각국 정부는 당사국에서 본 제도의 시행을 목적으로 기관을 지정한다.

17.2. OECD는 지정기관의 이름과 주소 및 그 지정에 있어 어떠한 변경도 참가국 모두에게 통보한다.

17.3. 본 제도의 운영과 진전사항은 지정기관 대표자 연례회의에서 검토한다.

연례회의는 농업위원회에 그 업무사항을 보고하며 또한 필요한 제안을 한다.

17.4. 연례회의는 매년 회원중에서 자문단을 임명한다.

자문단의 역할은 본 제도의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사무국을 자문하며, 본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긴급문제를 처리하고, 차기의 연례회의의 준비를 돕는다.

17.5. 본 제도의 운영상 국제수준에서 필요한 조정 업무는 OECD가 보증한다.

17.6. 종자가 본 규칙과 지시사항에서 정의된 범주중 하나로 상표가 부착되고 공식적으로 봉인되었다면, 본 규칙과 지시사항에서 규정된 모든 절차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된다.

17.7. 보증 및 label의 사용과 본 규칙과 지시사항에서 규정된 증명서에 대하여 OECD는 어떠한 보상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부록 1 OECD 채소종자제도용 용어 정의

빈 면

부록 1 OECD 채소종자제도용 용어 정의

1. 채소종자

채소종자는 관계 지정기관이 인정하는 모든 종류의 채소의 종자이다.

2. 지정기관

본 규칙과 지시사항의 시행을 목적으로 참가국 정부가 지정한 기관으로서, 동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3. 육종자(Breeder)

OECD 채소종자제도에 적격하며 국가목록속에 포함된 재배종의 생산 및 유지에 책임있는 사람 또는 기관

4. 재배종(Cultivar)

형태학적, 생리학적, 세포학적, 화학적 및 기타 특성이 분명히 구별되며, 생산시 이러한 특성이 유지되는 재배식물의 집합을 지칭한다.

5. 양친물질(Parental Material)

육종자가 그의 재배용을 유지하는데 사용하는 최소단위. 이로부터 그 품종의 모든 종자가 1세대 이상을 통하여 파생한다.

6. 기본종(Pre-Basic Seed)

기본종자(Basic Seed)이전 세대의 종자는 기본종으로 알려져 있으며 양친물질과 기본종자 사이의 어떠한 세대일 수 있다.

7. 기본종자

재배종의 유지를 위해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방법에 따라 육종자의 책임아래 생산된 종자로서, 보증종자의 생산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종자는 본 제도의 적절한 조건과 일치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건의 충족은 공식 시험을 통하여 확인된다.

8. 보증종자(Certified Seed)

재배종의 기본종자의 증식상 첫 세대인 종자이며, 채소 생산을 목적으로 한다. 보증종자는 본 제도의 적절한 조건과 일치하여야 한다.

9. 표준종자(Standard Seed)

공급자가 재배종에 대하여 순종이며 품종적 순도가 만족스럽다고 신고한 종자. 본 제도의 적절한 조건과 일치하여야 한다.

부록 2 OECD 채소종자제도하에서 기본 및 보증종자 생산을 위한 최소조건

빈 면

부록 2 OECD 채소종자제도하에서 기본 및 보증종자 생산을 위한 최소조건

1. 종자작물 생산에 사용되는 종자의 건강상태

종자작물 생산에 사용되는 종자는 해충(pest)과 질병이 가능한 한 없어야 한다. 종자의 건강상태는 사용전 점검되어야 하며, 해충 또는 질병 유기체가 존재하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종자처리법이 있을때, 이러한 처리는 반드시 해야 한다.

2. 앞작물 재배(Previous Cropping)

2.1. 종자생산용 포장 또는 온실은 다음 사항에 의한 작물 종자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생식물이 없어야 한다.

2.1.1. 작물종자로부터 제거하기 어려운 종자

2.1.2. 교차수분(授粉)

2.1.3. 자생식물로부터 전파되는 종자전염병

2.2. 앞작물 재배는 현존하는 토양전염병이 수확된 종자에서 전파될 수 있는 위험을 가능한 한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한다.

2.3. 앞작물로 인하여 포장 또는 온실이 상기 이유 등으로 부적합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격리(Isolation)

종자작물은 꽃가루 오염 및 종자 전염병(종자 Virus 감염 및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야생식품 포함)의 모든 원천으로부터 격리되어

야 한다. 특히 거리는 다음 이상이어야 한다.

3.1. 외래의 꽃가루가 Beta 및 Brassica종(種)의 재배종에 심한 악화(deterioration)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

- 기본종자 1,000m
- 보증종자 600m

3.2. Beta 및 Brassica종의 재배종에 영향을 주는 외래 꽃가루의 또 다른 원천으로부터

- 기본종자 500m
- 보증종자 300m

3.3. 외래의 꽃가루가 다른 교차 수분종(cross-pollinating species)의 재배종에 심한 악화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

- 기본종자 500m
- 보증종자 300m

3.4. 다른 교차 수분종의 재배종에 영향을 주는 외래 꽃가루의 또 다른 원천으로 부터

- 기본종자 300m
- 보증종자 100m

상기 거리는 다른 종자 작물 및 식물에도 적용되며, 또한 채소생산용 작물로서 종자 작물과 같은 시기에 꽃이 피는 작물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바람직스럽지 않은 꽃가루 원천 및 종자 전염병으로부터 충분한 보호막이 있는 경우(예를 들면, 진디방지용 온실에서 생산되는 작물), 거리제한은 무시될 수 있다.

4. 종자작물검사

4.1. 기본종자의 각 작물(crop)은 지정기관을 대신하여 검사자가 성장의 적절한 단계에서 적어도 1회 검사하게 되며, 검사자는 특별훈련을 받은 자로서 지정기관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4.2. 각 종(species)의 보증종자의 작물중 적어도 20%는 검사자가 검사해야 한다.

4.3. 보증종자의 각 작물은 보증종자 생산의 책임자의 책임하에 검사된다.

4.4. 포장 검사자(field inspector)는 본 부록에 명시된 모든 최소요건이 충족되었는가를 점검한다.

4.5. 작물은 재배종에 대한 진위 및 품종적 순도와 관련하여 만족스로운 수준이어야 한다.

4.6. 종자 전염병은 가능한 한 최소수준에 있어야 한다.

빈 면

부록 3 Seed Lots의 참조번호

빈 면

부록 3 Seed Lots의 참조번호

1. 국제무역상 참조번호(reference numbers)는 동일한 형태를 취함으로써 쉽게 확인될 수 있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일이다.
2. 보증국가(country of certification)는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용 등록문자의 Code를 사용하여 표시한다. 지정기관이 1개이상인 경우, 적절한 머릿글자(Initial Letters)를 부가한다. 이 경우 상기 Code와 모순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참조번호의 나머지 부분은 seed lot을 동일국가에서 수확된 다른 seed lot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모든 참조번호는 같은 갯수의 숫자로 구성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편리하다. 따라서 몇개 정도의 seed lots이 보증될 것인가를 사전에 추정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0"의 갯수부터 시작한다. 즉, 발행될 보증서의 갯수가 9,999개를 초과하지 않을 듯한 경우 첫번째 보증서에는 "0001"의 번호가 주어지고, 10번째는 "0010"이 주어진다. 서로 다른 연도에 서로 다른 seed lot에 발행된 참조번호간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수확연도를 표시하기 위해 code letter가 사용될 수 있다.)

빈 면

부록 4 OECD Label의 설명/종자용기의 표시

빈 면

부록 4 OECD Label의 설명/종자용기의 표시

1. 기술사항

1.1. 유형(Type)): Label은 접착성이거나 비접착성일 수 있다. 그리고 정보는 한면 또는 양면에 인쇄될 수 있다.

1.2. 모양(Shape): Label은 모퉁이가 직각인 직사각형이어야 한다.

1.3. 색깔: Label의 색깔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기 본 종: 자색 대각선이 있는 흰색

기본종자: 흰색

보증종자: 청색(소포장된 보증종자 포함)

최종적으로 보증되지 않은 종자의 특별 label:

상기와 같으나 오렌지색 대각선이 있음.

표준종자: 짙은 노랑색

Label의 한쪽 끝은 최소 3㎝ 또는 label의 1/4중 적은 쪽으로 선택하여 검은 색으로 겹쳐 인쇄되어야 하며, label의 남은 부분은 상기 색깔 그대로 둔다.

1.4. 재료(Material): 사용된 재료는 정상적인 사용에서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견고해야 한다.

2. OECD제도에 대한 참조(Reference to the OECD Scheme)

OECD 제도에 대한 참조는 Label의 검은색 부분내에 또는 종자용

기의 바깥부분에 영어 및 불어로 인쇄되어야 한다(참조: 규칙 10.1. 2). 여기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져야 한다.

"OECD Seed Scheme" and "Systeme OCDE pour les semences"

3. Label의 정보

3.1. 규정된 정보

다음 정보사항은 Label의 색깔이 있는 부분(흰색, 청색 또는 짙은 노랑색)에 검은 형태로 인쇄되어야 한다.

3.1.1. 기본종

지정기관의 이름과 주소:

종(種)(Latin 이름):

보통이름:

재배종*:

기본종:

참조번호(참조: 부록 3)

그 종자가 보증종자에 앞선 세대수

3.1.2. 기본종자

지정기관의 이름과 주소:

종(Latin 이름)

보통이름:

재배종*:

기본종자:

참조번호(참조: 부록 3)

3.1.3. 보증종자

---

* 상업적 비밀때문에 기본종자의 생산자가 재배종의 이름을 label에 포함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code number가 사용될 수 있음. 재배종의 이름은 지정기관이 code number에 따라 기록한다.

지정기관의 이름과 주소:
종(Latin 이름)
보통이름:
재배종의 이름:
보증종자
참조번호(참조: 부록 3)

최종적으로 보증되지 않은 종자의 특별 label(참조: 규칙 7.6)은 label의 청색부분(겹쳐 인쇄된 검은 부분 제외)의 좌측 하단에서 우측 상단으로 오렌지색 대각선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 포함된 정보는 보증종자의 경우와 동일하나, "최종적으로 보증되지 않음"이란 말이 첨가된다.

3.1.4. 공식적으로 봉인되지 않은 "소포장"의 보증종자.(참조: 규칙 11.2 및 부록 4)
채소의 보통이름:
재배종의 이름:
포장자의 이름과 주소:
및 다음과 같은 말:
"OECD 보증종자에서 포장됨"
Code Number:

3.1.5. 표준종자
보통이름 :
재배종의 이름 :
표준종자
lot의 확인번호:
lot에 책임있는 사람 또는 회사의 이름과 주소:
및 다음과 같은 말:
"임의의 사후관리를 필요로 하는 종자"

3.2. 글자를 쓴 크기와 허용된 공간은 label을 쉽게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해야 한다.

3.3. 추가적인 정보는 사실적이어야 하며, 광고 성격을 띄어서는 안된다.

본 제도의 도입시 잘 알려진 재배종의 표준종자의 경우, 선택명(selection name)이 언급될 수 있다. 이 선택의 특별한 성질(particular properties)에 관한 참조사항은 있을 수 없다.

3.4. 3.1.1, 3.1.2 및 3.1.3에서 기술된 label은 지정기관이 발행한다.

3.1.4에서 기술된 label은 포장업자가 발행할 수가 있다.

3.1.5에서 기술된 label은 종자 공급업자가 발행할 수 있다.

3.5. 정보가 용기에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되었을 경우, 정보의 배열과 표시된 넓이는 정상적인 label과 가능한 한 비슷해야 한다.

4. 언 어

상기 2항에서 표시된 대로 영어 및 불어로 표시되는 본 제도의 참고사항을 제외하고, 모든 정보는 영어 또는 불어로 표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기타 언어로의 변역이 첨가될 수 있다.

부록 5.1 Specimen Certifcate

빈 면

부록 5.1 Specimen Certifcate

(하기에 수록된 모든 정보가 증명서에 포함되어야 하나, 그 배열은 지정기관의 재량에 달려 있다.)

국제교역되고 있는 채소종자의 통제에 관한
OECD 제도하에서 발행된 증명서

증명서를 발행하는 지정기관의 이름:
참조번호:
종(Species):
재배종:
용기번호와 lot의 신고된 중량:

이 참조번호를 갖고 있는 seed lot은 OECD 채소종자제도에 따라 생산되었으며, 다음과 같이[1] (잠정적으로) 승인되었다.

1) 기본종(자색 대각선이 있는 흰색)
1) 기본종자(흰색)
1) 보증종자(청색)

서 명:
장소 및 일자:

1) 필요시 삭제.

빈 면

부록 5.2 분석결과

빈 면

부록 5.2 분석결과

실험실 분석결과는 가능한 경우 ISTA의 규칙에 따라 발행된 오렌지색 또는 녹색의 국제종자 롯트보증서(Orange or Green International Seed Lot Certificate)에 표시되어야 한다. ISTA가 발행한 보증서의 사용을 원하지 않는 국가는 OECD 채소종자제도의 규칙과 지시사항에서 요구되고 있는 실험실 분석결과의 보고를 위하여 ISTA의 보증서를 model로 사용할 수 있다.

견본은 다음의 주소에서 얻을 수 있다.
The Secretariat, International Seed Testing Association
Reckenholz
P.O.Box 412
CH-8046-Zürich/Switzerland

ISTA가 발행한 증명서는 동 협회로부터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은 국가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ISTA의 증명서를 검사결과의 제시를 위한 model로서 사용하는 국가는 자국이 발행한 "Orange or Green Certificate"이 어떠한 암시(숨은 뜻)도 없다는 것을 보증해야 한다. 예를들면, ISTA에 조회할 수도 없으며, 증명서도 오렌지색 또는 녹색의 종이이여서는 아니된다.

빈 면

부록 6 보증종자 “소포장”의 최소무게

빈 면

부록 6 보증종자 "소포장"의 최소무게

1. Leguminous species		5kg
Zea mays L.	사탕옥수수 및 튀김옥수수	
2. Allium cepa L.	양파	500g
Anthris cerefolium(L.) Hoffm	양미나리	
Asparagus officinalis L.	아스파라거스	
Beta vulgris L. var. cicla(L.) Ulrich	Spinach beet	
Beta vularis L. var. rubra L.	Red beet	
Brassica rapa L. var rapa(L.) Thell	순무	
Citrullus lanatus(Thunb) Mansf	수박	
Cucurbita maxima Duchesne	호박	
Daucus carota L. ss. sativus(Hoffm.) Hayek	당근	
Lepidium sativum L.	Common Cress	
Raphanus sativus L	무우	
Scorzone hispanica L.	Scorzonera or	

Black Salsify

Spinacia oleracea L. 시금치

Valerianella locusta(L.) Laterrade

Corn Salad

3. 기타 모든 채소 100g

첨 부 2

국제교역되고 있는 채소종자의 통제에 관한 OECD 제도를 OECD 비회원국에 확대하기 위한 절차

빈 면

첨 부 2

국제교역되고 있는 채소종자의 통제에 관한 OECD제도를 OECD 비회원국에 확대하기 위한 절차

1. OECD의 회원국은 아니나, UN의 회원국인 국가나 또는 전문기관이 본 제도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서면 신청서를 사무총장에게 제출한다. 신청서에는 당사국의 채소종자 통제에 관한 세부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특히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 채소종자 통제에 관한 국가제도의 세부기술 및 이러한 통제를 관리하는 규칙(rules)의 사본.
   1.2. 채소종자 통제제도를 최소 3년간 실제 적용한 경험이 있다는 확인서 및 그 기간동안 생산된 종자의 세부사항.
   1.3. 가까운 장래에 OECD제도하에서 관리되기를 바라는 재배종 및 종자의 목록.
   1.4. OECD제도하에서 보증되기를 원하는 재배종의 기본종자를 계속적으로 공급하겠다는 협의서
   1.5. 본 제도하에서 대조구(control plots)에서 생산된 종자 시

료의 육성에 관한 제안서

1.6. 종자보증 업무를 위한 숙련된 인원 및 필요시설에 관한 사항.

2. 신청서는 OECD의 조정센터(the Coordinating Centre)[1]와 본 제도의 자문단(Advisory Group)이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OECD는 필요시 다음의 목적을 위해 종자 전문가를 신청국에 보낸다.

2.1. 본 제도의 규칙과 지시사항에 관한 기술적 행정적 의미 및 OECD와 국제수준에서의 조화를 설명

2.2. 본 제도의 운영을 위한 기술적 행정적 시설의 유무 확인

2.3. 본 제도의 운영초기에 전문가 지원의 필요성 검토

전문가는 자문단을 통하여 OECD가 선발하며, 전문가의 파견에 따른 비용은 신청국이 부담한다.

3. 신청국은 파리에서 개최되는 국가지정기관 대표자 연례회의에 대표자를 참석시킬 것에 동의한다. 처음으로 이 회의에 참석시, 관계 당사국의 대표자는 본 제도의 실제 작업의 견학 및 토론을 위하여 본 제도의 조정센터(및 기타 다른 국가 종자보증기관)를 방문하게 된다. 전체회의의 참석 및 견학에 따른 비용은 신청국이 부담한다. 신청국은 전체회의에 참석하는 대표자가 본 제도를 신청국에서 실시함에 있어 직접적인 책임을 가진 인물일 것에 동의한다.

4. 신청국은 본 제도의 조정센터와 협조할 것과 본 제도가 표준을 유지하는 경우 필수적인 OECD의 최소한의 감독을 수용할 것에 동의해야 한다.

본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OECD는

---

1) 본 제도의 기술적 조정을 보증하는 방법(참조. 규칙 18.5)은 OECD가 회원국의 국가기관중 하나를 OECD와 계약하에 조정센터로서 역할을 하게끔 임명하는 것이다.

신청국에서 본 제도의 시행에 책임있는 사람을 추가적인 교수기간동안 다른 OECD국가에 파견하거나, 또는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OECD가 선발한 종자인증 전문가의 추가적인 방문을 수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국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업무의 시기와 기간은 신청국의 당국과 협조하에 OECD가 결정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신청국이 부담한다.

5. 신청국은 연회비 25,000FF을 OECD에 지불할 것에 동의한다. 연회비는 OECD의 예산절차에서 사용되는 물가지수의 변경에 따라 매년 조정된다. 의무 불이행의 경우 본 제도의 자문단은 농업위원회에 보고하며, 농업위원회는 참가국의 지위를 검토하게 된다.
6. OECD가 2항에 관한 검토결과에 만족하고, 신청국이 3.4.5항에 나타난 사항에 관하여 서면으로 제출한다면, 본 제도의 조정센터 및 자문단은 신청을 승인하여 줄 것을 자문한다. 농업위원회는 이사회가 신청국의 가입을 승인할 것을 자문한다. 농업위원회는 이사회가 신청국의 가입을 승인할 것을 추천하게 된다.
7. 이사회의 승인후 OECD 사무총장은 신청이 승인되었음을 신청국에 통보하며, 본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참가국의 국가지정기관도 동 승인사항을 통보받는다.

빈 면

이 제도의 참가국

빈 면

이 제도의 참가국

회원국중 참가국: 호주, 오스트리아, 벨지움,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태리, 포르투갈, 스웨덴, 스위스, 영국, 아이슬랜드 등 13개국

비회원국중 참가국: 사이프러스, 이스라엘, 모로코, 루마니아, 남아공화국 등 5개국

참 고 문 헌

Decision of the Council establishing an OECD Scheme for Control of Vegetable Seed Moving in International Trade-Doc. No. C(91)/Final.

Decision of the Council Amending the Decision of the Council establishing an OECD Scheme for the Control of Vegetable Seed Moving in International Trade-Doc. No. C(77)121.

Decision of the Council Amending the Decision of the Council establishing an OECD Scheme for the Control of Vegetable Seed Moving in International Trade-Doc. No. C(76)133.

Decision of the Council Amending the Decision of the Council establishing an OECD Scheme for the Control of Vegetable Seed Moving in International Trade-Doc. No. C(74)197.

Decision of the Council establishing an OECD Scheme for the Control of Vegetable Seed Moving in International Trade-Doc. No. C(71)31(Final).

연구자료 D99/번역 자료

국제교역되고 있는 채소종자 통제를 위한 OECD제도

찍은날 1994. 12. 펴낸날 1994. 12.
발행인 정 영 일
펴낸곳 한국농촌경제연구원(962-7311~5)
130-0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등 록 제5-10호(1979. 5. 25)
찍은곳 (주) 문 원 사 739-3911~5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이 연구는 본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